

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.반설치조례개정청원
심 사 보 고 서

2005. 3. 8.
행정 위원 회

1. 경 과

- 가. 청 원 자 : 영등포1동 570-3호 이정규 외 20인
 - 나. 소개의원 : 안주영 의원
 - 다. 접수일자 : 2005. 2. 22
 - 라. 회부일자 : 2005년 2월 24일 회부
 - 마. 상정일자 : 2005년 3월 7일
- 제111회(임시회) 제3차 행정위원회 청원안 채택

2. 청원요지

- 가. 제4조 통장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
- 나. 부칙에 경과 규정율 두어 기 위촉되어 활동중인 통장은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임기를 3년간 연장.

3. 소개의원 요지

- 가. 통장의 임기가 60세 이하의 주민중 통장의 추천과 구청장의 위촉으로 2년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, 이는 통장들이 지역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여 구정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에는 그 기간이 짧아 어려움이 있음

4. 검토의견(전문위원)

- 가. 2001.1.9 개정된 현행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.반설치조례는 구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많이 늘어났고, 세계화시대에 발맞추려면 연령은 낮아져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연임의 제한과 연령의 하향 제한을 하였으며, 시대의 변화에 다른 타당한 판단으로 사료되며,
- 나. 다만 서울특별시 다른 구의 사례를 보면 25개 자치구 모두 임기는 2년 이고, 연임횟수에 제한이 없는 구가 16개구, 2회에 한하는 구가 6개구, 1회에 한하는 구가 우리구를 포함하여 3개 구이며,
- 다. 본 청원을 가결시킬 경우에는 2001.1.9 조례개정 이후 위촉된 통장의 임기가 부당하게 연장될 우려가 있으므로, 청원의 가결후 현재 위촉된 통장의 임기에 관한 별도의 부칙을 두어야 할 것임.

5. 심사결과 :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함.

6. 의견서 : 별첨

의 건 서

- 청원명 :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.반설치조례개정에 관한 청원
- 처리하여야 할 기관 : 영등포구청장
- 채택의견
 - 통장의 임기를 3년으로 연장하고 기 위촉되어 활동중인 통장은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임기를 3년 연장하여 달라는 청원으로 통장 임기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토록 본 청원을 채택하였음.

<별지 제3호서식>

청원요지서

접수년월일	2005. 2. 22		접수번호	1
청원인	주소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1동 570-3호	성명	이정규외 20명
소개의원	안주영		소관위원회	행정위원회
건명	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.반설치조례 개정			

요지

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.반설치조례 제4조(통장의 임기)에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을 임기를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, 또한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기 위촉되어 활동중인 통장은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임기를 3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영등포구 통.반설치조례 개정을 요구한 청원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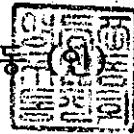
2005. 2

수신 : 영등포구 구의회 의장님


제목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개정

위의 청원을 지방자치법 제 65조의 규정에 의하여
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

청원자 : 영등포구 각동 통친회대표 일동



청원소개의견서

청원건명	통·반장설치조례 건		
청원인	주소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1동 570-3	
	성명	이정규 	주민등록번호
소개의원	안주영 (인)		
소개년월일	2005. 2. 22.		
<p>소개의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01년 1월 9일 개정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·반설치조례에 통장의 임기는 60세 이하의 주민 중 통장의 추천과 구청장의 위촉으로 2년에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. ○ 통장들이 지역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여 구정을 주민들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에는 그 기간이 짧아 어려운 점이 있어 왔습니다. ○ 그동안 관할 통에서 주민들을 직접 상대하면서 일하고 있는 통장들의 의견은 임기를 3년으로 연장하고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. ○ 주민을 위해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본 청원을 검토하여 청원인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협조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. 			

청 원 서

○ 존경하는 영등포구의회의 의장님

영등포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산적한 난제들을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.

○ 다름이 아니오라 2001년 1월 9일 개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, 반장 설치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

현재 영등포구 각동 통장 700여명은 다년간 활동으로 인하여 지역 주민은 물론 지역 현실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 동 행정 및 구정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.

○ 이번 청원내용은 만 60세로 나이제한을 두고 임기 2년에 1회 연임 할 수 있게 되어있는 현 조례를 나이는 현행대로 만 60세로 하고 임기만큼은 3년에 1회 연임 할 수 있도록 하며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기 위촉된 통장이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임기를 3년간 연장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청원입니다.



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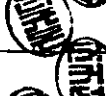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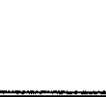

의원님들께서 선처하여 주신다면 우리구 현 통장들은 구정발전과 동 행정 발전에 협력 할 수 있는 기회로 알고 더욱 더 열심히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.

2005년 2월 일

서울시 영등포구 각동 통친회장 일동

영등포구 각동 통친회대표 명단

2005년 02월 일 현재

동명	통명	성명	주소	주민번호	서명
영등포1동	14	이정규	영등포동 570-3	470206-	
영등포2동	13	문정만	영등포동 5가 34-26	480504-	
영등포3동	17	최정수	영등포동8가 31-8	440810-	
당산1동	13	이상세	당산동 1가 141	531226-	
당산2동	13	최수근	당산동 6가 237-101	440215-	
도림1동	13	박해열	도림1동 141-187	560101-	
도림2동	22	김주방	도림동 232-18	500406-	
문래1동	16	오운수	문래동 3가 4	491210-	
문래2동	2	송순석	문래동 4가 22-11	510930-	
양평1동	25	서신일	양평동 3가 32-16	440910-	
양평2동	9	김승희	양평동 4가 141	610319-	
신길1동	11	차중환	신길1동113-5효성빌라 101	480424-	
신길2동	6	이갑제	신길동 186-56	480228-	
신길3동	21	한규돈	신길동 347-2	560103-	
신길4동	12	서귀석	신길동 235-1	540322-	
신길5동	13	이명석	신길동 420-23	460707-	
신길6동	10	하계권	신길동 3747	550720-	
신길7동	22	김기학	신길동 1410	461111-	
대림1동	16	최정택	대림동 992-26	510816-	
대림2동	9	최한중	대림 992-19	530823-	
대림3동	33	박정하	대림동 604-92	480114-	